

의약품 관리

23.8.25 약제부

처방 관련 협조 사항 (1)

- ▶ 경구약 **정기처방** (daily **처방** 및 **조제 system**)

당일 3:30 마감집계

-> 조제 준비 (처방 감사 및 처방 전송)

-> 조제 -> 조제 후 감사

-> 병동에 약 불출 (11시정도)

-> **당일 점심 / 저녁 / 익일 아침약으로** 투여

- ▶ **당일 아침약이 없어 응급으로 필요시**

-> 아침약 **1회분** 미리 응급 오더로 처방하여 prep

-> 정기처방 1일분 (**TPC용법**) **전체를 응급오더로 변경** 자제
(새벽마다 동일 환자 반복되는 상황 지속의 어려움)

-> 산제 (가루약) 조제, 경구약 조제, 주사제 순으로 업무로딩

처방 관련 협조 사항 (2)

- ▶ 퇴원약 장기 처방 일수 자제

- > 1주~최대 2주로 조정하고 환자 외래 진료 연결
- > 특히 산제처방 (가루약 조제) 조제 지연 및 환자 대기 발생
- > 30일/60일 이상의 장기처방 자제

마약류 관리 교육

목 차

교 육 배 경

용 어 의 정 의

마 약 류 취 급

기록의 작성 비치

행 정 처 분 기 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사전알리미 제도

교육배경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대상	마약류 취급자
시기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
추가	마약류의 도난·분실로 주의 촉구가 필요할 때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교육이 필요할 때

용어의 정의

<p>마약류</p>	<p>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p>
<p>마약</p>	<p>양귀비·아편 또는 코카 잎(엽) 및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위와 동일하게 남용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한외마약 제외</p>
<p>향정신성의약품</p>	<p>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대마</p>	<p>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p>

💡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 분류표

연번	분류명	소속 성분
1	진통제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2	항불안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맥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3	최면진정제	졸피뎀, 펜토바르비탈, 클로랄히드레이트, 쿠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미다졸람, 플루라제팜, 조피클론
4	마취제	프로포폴, 케타민, 티오펜탈, 서펜타닐, 알펜타닐, 레미펜타닐, 펜타닐(주사제), 레미마졸람
5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로카세린, 마진돌
6	진해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
7	항뇌전증제	페노바르비탈, 클로나제팜
8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9	항우울제	케타민(에스케타민의 비강투여 제제에 한함)

마 약 류 취 급 자

- ▶ 1. 마약류수출입업자
- ▶ 2. 마약류제조업자
- ▶ 3. 마약류원료사용자
- ▶ 4. 대마재배자
- ▶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 6. 마약류도매업자
- ▶ 7. 마약류관리자
- ▶ 8.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의사 포함)
- ▶ 9.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 도매업자

정 의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업자 중 마약류도매업의 허가를 득한 자
마 약 취 급	도매업소 소재지내의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 관리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만 판매 마약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향 정 취 급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만 판매
준 수 사 항	변경 및 휴·폐업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허가증을 당해 업소 안에 게시하고 허가증의 양도 및 대여 금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니면 마약류 처방 불가하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다)

마약 처방전에는 의료기관 소재지, 상호, 면허번호, 서명 또는 날인,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일을 기입하여 그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 비치 및 보존 (2년 보관)

마약류 관리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서 **구청장의 지정을 얻은 자**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함. 단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 예외**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가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지 못함

변경 및 휴·폐업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지정서를 당해 업소 안에 게시하고 지정서의 양도 및 대여 금지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의 금지

마약류는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예외사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를 위해 운반·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 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식약처장이 공익을 위해 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류를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마약류 중독자

- ▶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제22조 마약 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 ▶ 1)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①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 ②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 ③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 약 취 급

<p>매매·수수</p>	<p><u>마약 구입서·판매서</u>에 서명(날인)하여 교환(2년간 보관) 봉합된 마약만 수수해야 함 대전시 소재 마약도매업소에서만 마약 구입 가능</p>
<p>보 관</p>	<p>취급자의 업소 내,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 이동이 불가능한 이중 철제 금고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p>
<p>사 용</p>	<p>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서 류</p>	<p>마약처방전,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잔여마약류 폐기 보고서(2년 보관) 구입·반납/조제투약/폐기 기록은 NIMS 보고됨</p>

마약 구입.보관

- ▶ 마약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
- ▶ 일반의약품과 별도 보관 , 금고에는 마약류만 보관
- ▶ CCTV설치
- ▶ 점검일지 작성(주1회 이상) - 1일 1회 작성



마약.향정 주사 투약



잔여마약류 반납



잔여마약류 폐기

- ▶ 근거: 식약청 마약류관리과-3246호(2011.04.07)
- ▶ 마약류 취급자 및 직원 1인 이상 입회 하에 폐기(사진첨부)
 - ▶ → 의료용 폐기물 처리(소각)
- ▶ 폐기사유:재고 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경우
- ▶ **종합병원 잔여마약류 폐기 결과:** 근거서류 보관(2년),
폐기량은 자동으로 NIMS 보고

주사용 마약류 투약확인

마약투약확인(Service : GGT06TOP, Server : MGGT01SV)

처방기간 2015.12.01 ~ 2015.12.15

조회품목 % 전체

사용병동 외상중환자실

조회 확인저장

전체선택 전체해제

출력

마약투약확인시 이상 DATA는 마약관리실(3938)로 문의해주세요!!

"10% 절약! 실천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마약 투약 확인 장부

◎ 품 명 : Fentanyl 2ml
 ◎ 단 위 : Fentanyl citrate 100mcg/2ml / 2ml/ample 1 / 2

No.	확인	일 자	사용부서	성명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상	약품코드	투약량	투약확인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3	외상중환자실	정하남	84	F	ICH	MFTNN	0.5	확인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4	외상중환자실	김은지	7	F	SDH	MFTNN	5	확인
3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7	외상중환자실	안분숙	84	F	Cholangitis	MFTNN	1	확인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1	외상중환자실	장미진	39	F	SAH	MPET25	0.5	확인
5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3	외상중환자실	장미진	39	F	SAH	MPET25	0.5	확인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5	외상중환자실	황선우	59	M	pnx	MPET25	1	확인
7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7	외상중환자실	장미진	39	F	Concussion	MPET25	0.5	확인
8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9	외상중환자실	손석호	37	M	Open wound of abdominal wall	MPET25	1	확인
9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10	외상중환자실	장미진	39	F	fx	MPET25	1	확인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11	외상중환자실	장미진	39	F	fx	MPET25	1	확인
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13	외상중환자실	김종순	85	F	fx	MPET25	1	확인
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15	외상중환자실	안분숙	84	F	Contusion of front wall of thorax	MPET25	1	확인
13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2	외상중환자실	장세라	30	F	Headache	MULTV	10	확인
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3	외상중환자실	정하남	84	F	ICH	MULTV	2	확인
15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1203	외상중환자실	윤희병	86	F	SAH	MULTV	20	확인

총투약량 : 380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수 수	<p>봉합을 하지 아니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금지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p>
보 관	<p>취급업자의 업소 내,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 이동이 불가능한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p>
사 용	<p>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서 류	<p>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잔여마약류 폐기 보고서(2년 보관) 구입·반납/조제투약/폐기 기록은 NIMS 보고됨</p>

사 고 마 약 류

정 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해로 인한 상실2. 분실 또는 도난3. 변질 ·부패 ·파손
발생신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에 보건소에 신고 증명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재해로 인한 상실 -> 시도지사 발급 서류2. 분실 또는 도난 -> 수사기관 발급 서류
폐기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고마약류 중 변질·부패·파손된 경우2.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경우3. 재고 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경우

마약류 취급자 관리 의무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경과 마약류의 판매 및 사용 금지

마약류의 입·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 작성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취급자가 지정한 자만 출입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기록을 작성·비치할 것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기록의 작성·비치(2년 보관)

1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2	마약처방전
3	잔여마약류 폐기보고서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4차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 이 법에 의하여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	업무정지 6개월	허가·지정 취소		
마약류 취급자가 법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품목허가용량 이상 남용)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 받지 아니한 때(분실, 파손)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업무정지 6개월	허가·지정 취소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4차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지정 · 승인 취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 개월 또는 허가·지 정·승인 취소	허가·지 정·승인 취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 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또 는 허가· 지정·승 인 취소	허가·지 정·승인 취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 정·승인 취소	허가·지 정·승인 취소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4차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지정 취소	허가·지정 취소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지정 취소	허가·지정 취소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 지정 취소	허가·지정 취소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저장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법 제2호 제3호가 목부터 다 목까지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호 제3호 라 목 및 마 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4차
마약류취급자가 봉합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때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점검부를 일부 항목만 작성하거나 작성한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4차
마약류취급자가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 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 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업무정지 3개월	허가·지정 취소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 47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기타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도록 만들어진 정보시스템

NIMS (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공지사항

시스템	테스트 종료에 따른 데이터 초기화 안내	2018-04-25
시스템	(회원가입) 마약류취급자 회원가입 절차 가이...	2018-04-23
기타	(의료기관, 약국)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2018-04-20

자료실

교육홍보	취급보고따라하기 매뉴얼_약국편	2018-04-25
교육홍보	취급보고따라하기 매뉴얼_도매업자	2018-04-25
연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_연계개발가이드 v1.21	2018-04-1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시행:2018. 5. 18)

- ▶ 1. 마약류 의약품 관리제도 변화 필요성
 - ▶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사용, 관리 사각지대 존재**
 - ▶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한 사용정보 부족
- ▶ 2. 마약류 유통, 사용의 모니터링 체계 필요
 - 마약류 제조, 수출입, 유통, 투약, 조제, 반품, 폐기 등
 - ▶ 전체 취급내역을 상시보고 모니터링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품목

구분	대상품목	보고시점
중점 관리	1.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 2. 식약처장이 공고('18.2.9)한 향 정신성 의약품(propofol)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반 관리	1.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 신성 의약품(propofol 제외)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의 취급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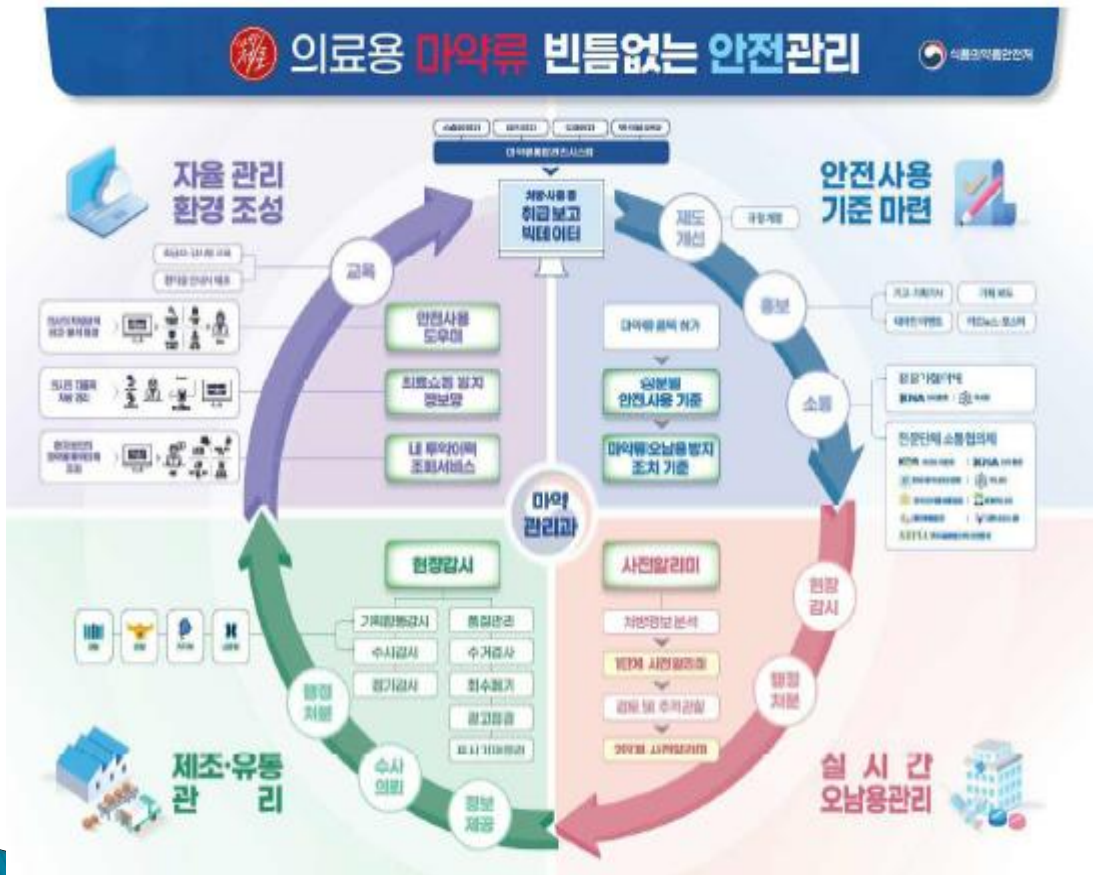
구분	취급보고	주요 보고 정보
중점 관리	구입·양도·양수· 폐기·조제· 투약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적정보(거래자,의료인,환자) 2. 제품정보(품명, 제조번호, 품목코드, 최소유통단위, <u>일련번호</u>) 3. 조제·투약정보 (투약·조제량·질병·처방정보)
일반 관리	구입·양도·양수· 폐기·조제· 투약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적정보(거래자,의료인,환자) 2. 제품정보(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품목코드, 최소유통단위) 3. 조제·투약정보 (투약·조제량·질병·처방정보)

협조사항

- ▶ 1.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입력
- ▶ 2. 마약 및 향정신성 주사제 - 1일 처방 X, 1회 처방으로 변경
- ▶
- ▶ 3. Propofol 주사제(Fresofol) - 향정처방전 작성
(중점관리 및 잔량보고)
- ▶
- ▶ 4. 마약류 처방 반납 - 당일처리
- ▶ 반납처방감소: 적절한 처방 건수 협조 - 예) Morphine
- ▶ 5. 집계 전 처방수정 시 마약처방전도 동시에 수정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로드맵

빅데이터를 활용한 처방분석 및 마약류 안전사용 로드맵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진통제 조치기준> (비암성 만성통증)

○ 전체 마약류(패치제 제외)

- (기간) **3개월** 초과 처방. 투약

- (연령)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금기를 벗어난
처방. 투약

○ 펜타닐 패치제

- (기간) 3개월 초과 처방. 투약

- (연령) **만 18세 미만** 처방. 투약

- (투여간격)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 간격을 벗어난
처방. 투약

사전 알리미 제도 시행

사전알리미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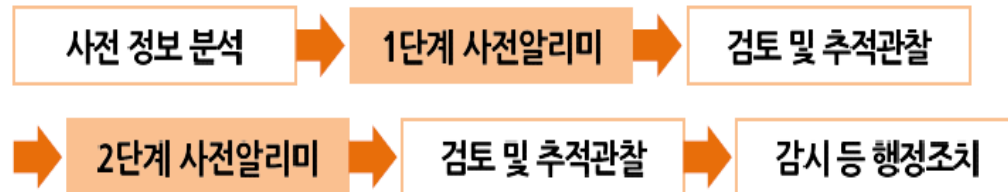
○ 개요

- ✦ 안전사용기준 및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사용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를 대상으로 2차례(1, 2단계) 서면경고 후 추적관리('20.12월~)

○ 대상

- ✦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사용한 오남용 의심 의사

○ 절차



○ 실적

- ✦ 오남용 의심 의사(총 5,168명)에 대해 처방정보 분석 등 추적관리

사전 알리미(1차) 사례

사전알리미(1차) 세부 지방 정보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취 내부관리번호	사전알리미 사유	회사연혁번호-성명	취급일자	취급기관번호	취급기관명	지방기관주소	취급일자	성별	나이	취급량
E0113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01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분심, 서	남	17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14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04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분심, 서	남	17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15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07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5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16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10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5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17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13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5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18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16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6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19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19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5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20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22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5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21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25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5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22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28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5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23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731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6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24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803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6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25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806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영	남	15	다프리엔페워 12µg/h (1.38mg)
E0126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826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린	남	17	다프리엔페워 25µg/h (2.75mg)
E0127	만 18세 미만 처방		20210829	34100041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충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박, 린	남	17	다프리엔페워 25µg/h (2.75mg)
			15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처방과 사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